

정상계약 전환신청서

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귀하

제출일 : 20 년 월 일

소기업·소상공인공제 계약과 관련하여 본인은 부금 장기미납에 따른 강제해지 대신 부금납부 재개를 통한 정상계약 전환을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.

○ 정상계약전환신청

성명		서명 또는 날인	주민등록번호	
전화번호			사업자등록번호	
주소				
납부재개 시작일	년 월 일			

○ 공제거래계좌 자동이체 변경신청(해당자만 작성)

구분		변경 전	변경 후
☐ 부금납부기일 변경	월납	매월 () 일	매월 () 일
	분기납 * 26.7.1 이전 신청자에 한함	매분기 ()째달 ()일	매분기 ()째달 ()일
☐ 부금월액 변경		금 원	금 원
		변경 기산일 : 20 년 월부터 변경 사유 :	
☐ 계좌변경	거래은행		
	계좌번호		
	※ 경남, 광주, 국민, 기업, 농협, iM뱅크, 부산, 산업, 수협, 신한, 씨티, 우리, 전북, SC제일, 제주, 하나, 우체국, 새마을금고, 신협 중 택일 ※ 계약자 본인의 개인계좌 이외에는 지정할 수 없습니다.(법인통장 사용불가)		

※ 납부재개 시작일로부터 매월 그 기일마다 고객님의 공제거래계좌에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부금이 출금됩니다.